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81
----------	-------

발의연월일 : 2022. 4. 15.

발 의 자 : 김태호 · 강기윤 · 金炳旭

김성원 · 김승수 · 김용판

박완수 · 안병길 · 엄태영

이종성 · 정운천 · 홍문표

홍석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

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400(2023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62)”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액 2. ~ 6. (생략) ② (생략)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 ----- ----- ----- ----- ----- ----- <u>1만분의 2,400(2023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62)--</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